‘26년 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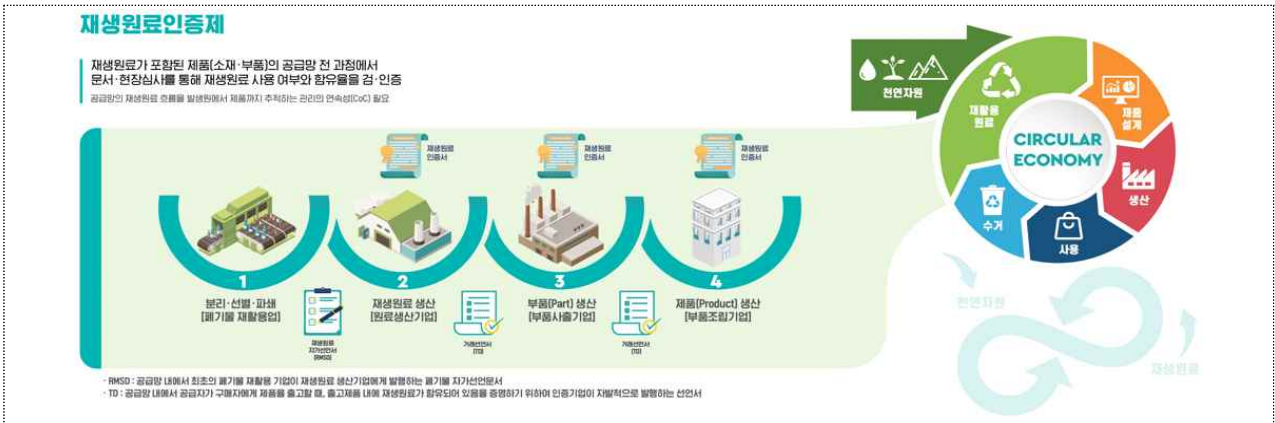
2026년 「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」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2. 24.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
1. 재생원료인증제 개요

□ 제도 개념

○ **‘재생원료인증제’**는 재생원료가 포함된 신청제품(소재 · 부품)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여부와 함유율을 인증하는 제도



< 재생원료인증제 개념 >

□ 배경 및 목적

○ 글로벌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* 강화 및 바이어 요구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재생원료인증제 시범 추진 중

* EU 신배터리법(재생원료(금속) 의무 사용(’31)), PPWR(재생원료(플라스틱) 의무 사용(’30))
미국 EPEAT 공공구매(친환경설계 요구 기준 중 재생원료 사용여부 의무 평가 등)

○ 시범 사업을 통해 공급망 내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수용성 및 실효성을 검토

2. 시범사업 범위 및 주요 내용

□ 시범사업 범위

○ **(인증범위 확인)** 재생원료 생산·사용기업 등 공급망 전 사업장 분석을 통해 인증대상과 非인증대상 사업장을 구분

○ **(실무자 교육)** 재생원료를 취급하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기초교육 실시

○ **(컨설팅)** 사업장별 재생원료 사용(종류, 함유율 등)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서* 마련, 재생원료 추적성 관리 등 인증심사 항목별 진단·컨설팅

*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(SOP)

○ **(시범인증)** 인증심사 전문가가 문서·현장 심사를 통해 사업장별 재생원료인증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

□ 지원내용

○ 시범인증 추진 비용 무료

○ 시범인증(문서·현장심사) 결과보고서 제공

○ 본 제도 시행시 심사절차의 간소화로 심사 일부 갈음

□ 추진 기간 및 절차

○ **(추진 기간)** 선정일로부터 ~ ’26. 10. 30

※ 단, 시범인증 추진 상황에 따라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음.

○ 시범사업 추진 절차

절 차	추 진 내 용	일 정
① 모집 공고	○ 참여기업 모집 공고	2.24~3.23
② 서류 접수	○ 제출서류(필수, 선택) 접수	3.16~3.23
③ 사전 검토	○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	3.24~3.27
④ 선정 평가	○ 제출서류 및 신청기업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실시	~4월 초
⑤ 결과 통보	○ 최종 선정 및 통보(생기원 → 신청기업)	~4월 중순
⑥ 시범인증	○ 실무자 기초교육, 진단 및 컨설팅, 시범인증	4월 중~9월
⑦ 시범인증 결과 공유	○ 시범인증 심사결과보고서 공유	~10월

* 상기 일정은 사업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지원대상 및 요건

○ **지원대상**

- **(산업)**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나, 경합 시 알루미늄, 철강재, 타이어, 사용후 배터리를 우선 지원
- **(기업)** 재생원료 생산 · 사용(계획) 기업*(사업장)

  * (사례) 재생원료 생산기업, 재생원료 사용기업(원료・부품・제품 등), 유통기업 등
- **(원료)** 국내 · 외에서 생산 또는 구매한 재생원료

○ **지원 요건**

- 신청기업을 중심으로 상위 공급망 대상 기업(재생원료 생산기업)은 필수 참여
- 재생원료 생산기업은 최상위 공급망으로 단독 참여 가능
- 현재 재생원료를 생산 · 사용하지 않지만, 생산 및 사용 계획이 있는 기업도 신청 가능(단, 신청기업이 작성한 제품 생산 계획의 공급망만 참여 가능)

-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상 여부 또는 적격 여부 확인

---------- **< 지원대상 및 요건 사례 >** ----------

- (사례1)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원료와 해외에서 구매한 재생원료 둘 다 시범인증 신청 가능함.
- (사례2) 소비자 사용 전·후 (PIR, PCR) 및 혼합(PIR+PCR)도 재생원료로 신청 가능함.
- (사례3) 최초 신청기업이 부품 생산기업일 경우, 상위 공급망인 재생원료 생산기업은 필수로 참여함.
- (사례4) 재생원료 생산기업은 단독으로 시범인증 참여 가능함.
- (사례5) 현재 재생원료를 생산·사용하지 않지만 '26년 이내에 생산 및 사용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, 시범인증은 현재 생산·공정으로 실시할 수 있음. (단, 제도 시행시 실제 재생원료 생산·사용에 대한 별도 확인 등이 필요)

3. 참여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

□ 선정 절차

○ **(적합성 검토(1차))** 기업이 제출한 서류로 시범인증 지원대상 및 요건의 적합성 여부 검토

○ **(전문가 평가(2차))** 시범인증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

○ **(결과발표)** 서류 및 전문가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시범인증 참여기업에 개별 통보

사전 검토	⇨	적합성 검토 (1차)	⇨	전문가 평가 (2차)	⇨	대상 선정
서류 누락 등 검토		제출서류로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		선정기준 부합여부 질의응답		시범인증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

□ 선정 기준

○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 기업을 선정

평가항목	평가지표	주요내용	배점
공급망 역량	공급망 참여 기업 수	시범인증에 참여 가능한 공급망 내 참여기업 수 (※ 3개 이상 참여시 만점 부여)	30
	시범인증 준비도	신청한 공급망 기업의 시범인증 준비 정도 ① SOP 구비, ② '26년도 상반기 내 재생원료 생산·사용 가능, ③ 모집기간 내 비밀유지계약서 서류 서명 및 제출 (※ 전 공급망 기업이 ①~③ 서류 제출시 만점 부여)	25
	기업 수행 역량	신청기업의 인증심사 참여의지 및 역량	20
지원 타당성	규제·정책 대상	국내·외 재생원료 관련 규제·정책의 대상 포함 (①국내 : 플라스틱(PET 등), 철강 스크랩, 폐유리, 폐지 등 ②해외 : 사용후배터리, EU ESPR 대상 제품, 포장재 등)	15
	다양성 확보	본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(사업장)	10

* 선정 우대요건 만족시 평가지표별 만점 부여

○ 선정 우대요건

- 알루미늄, 철강재, 타이어, 사용후 배터리는 우선 적용 산업군으로 경합시 선정 우대

- 최종제품 생산기업(완제품 업체 또는 브랜드 업체)이 재생원료 생산 단계부터 최종제품 생산단계까지 전체 공급망* 기업이 신청한 경우

  * 단, 완제품 업체(또는 브랜드 업체)가 전체 공급망 기업과 같이 신청할 경우, 공급망 기업 중 유통업체가 포함하지 않아도 전체 공급망으로 인정

- 전체 공급망 기업이 '26년도 상반기 내 재생원료를 생산·사용하는 경우

- 전체 공급망 기업의 사업장 내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*(SOP)를 구비한 경우

  * 단, 기존 생산 및 업무절차서에 재생원료를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, 재생원료 관리 업무절차서를 구비한 것으로 인정

- 전체 공급망 기업이 비밀유지계약서* 서류에 서명하여 모집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

  * 기업이 사용하는 별도 양식도 가능

□ 기타 유의사항

ㅇ 시범인증 참여기업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그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에 협조 필요

* 외부에 공개하기 전, 기업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

ㅇ 기존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시범인증을 받지 않은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

ㅇ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은 본 제도 시행 이전까지 시범인증을 수행하면서 습득한 정보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음.

ㅇ 시범인증에 참여한 기업은 본 제도 시행시 시범인증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시범인증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 인증 심사 일부를 갈음할 수 있음.

4. 신청방법 및 문의처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	원본/사본	양식
1	**[필수]** 재생원료인증제 신청서. 1부. (각 사업장별로 작성)		원본	별첨 1
2	**[필수]**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. 1부.		사본	
3	기타 서류	[선택] 표준업무절차서(SOP). 1부.	사본	
		[선택] 비밀유지계약서. 1부.	사본	별첨 2
		[선택] '26년도 상반기 내 재생원료 생산・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사본	
		[선택] 재생원료 관련 타 인증(UL ECVP, GRS, ISCC 등)을 취득한 인증서. 1부.	사본	

□ 신청방법

○ 아래 사례를 참고하여 하나의 폴더 안에 제출서류를 저장, 압축파일로 만들고, 압축된 파일명*은 제출한 기업명으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

* (사례) A주식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파일명은 "A주식회사"로 작성하여 제출

- 공급망 기업이 다수일 경우도 서류는 각 기업(사업장)별 제출

※ (작성 사례) A주식회사, B주식회사는 같은 공급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자 함 1) 기업별로 따로 제출 2) A주식회사는 제출서류를 압축하여 압축된 파일명을 "A주식회사"로, B주식회사는 제출서류를 압축하여 압축된 파일명을 "B주식회사"로, 작성한 후 각각 제출 3) 각 회사별 압축된 파일 내 폴더는 우측과 같이 파일명을 작성	[폴더명] A 주식회사 [파일명] 재생원료인증제 신청서(A 주식회사) [파일명] 재생원료 인증 신청제품 내역서(A 주식회사) [파일명] ..... [파일명] .....

○ (제출처) ce@kncpc.re.kr

□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

○ (공고 기간) '26. 2. 24(화) ~ '26. 3. 23(월)

○ (서류 접수 기간) '26. 3. 16(월) ~ '26. 3. 23(월)

□ 문의처

담당자		연락처
한국생산기술연구원 (순환경제실)	윤혜리수석	02-2183-1528
	문경은선임	02-2183-1529